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아무런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 조항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세번째, 특별법에서는 직장내의 관계를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동료나 고객, 거래처, 직장알선을 미끼로 성폭력을 행하는 사례들이 제외되고 있다.

3장에서는 고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의 상호관계가 고소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요인으로는 사건 자체의 특성, 경,검찰의 태도, 주변인의 지원체계, 그리고 개인의 의지정도를 들 수 있다. 사건 자체의 특성은 증거확보를 얼마나 명확하게 하는가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으므로 언어추행이나 성추행의 경우 증거확보가 문제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개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추행 고소는 증거불충분이라는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강간과 비교하여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해나 진단서 등을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직장 내에서도 증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추행일 경우 증거로 채택하는 증거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언어추행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법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의 규정, 제재 장치의 보완 등이 요청되고 있다.

세번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가해자의 추적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녹음테이프의 감식이 어렵고, 가해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하였을 경우는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또한 아직까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이다. 특히 컴퓨터나 전화사서함 이용과 같이 다양화되는 가해방법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법기관 관련자의 태도 부분에서는 이들이 왜곡된 성폭력 인식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강압적인 수사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피해자 보호 수준의 미비로 연장된다. 따라서 경찰, 검찰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문제가 보완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사를 지체한다거나 가해자 위주의 편파수사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다거나 화간이나 간통으로 사건을 인식하므로 합의중용이나 고소취하를 중용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검찰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 경,검찰에게는 성폭력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성폭력전담경찰제도의 도입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법적 절차는 피해자가 아무리 어린이 일지라도 직접 법정에서 서도록 한다. 부모들이 재판과정에서 아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볼 때 법정대리인의 선정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고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세번째는 주변인 및 지원체계의 태도이다. 고소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사례들이 고소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것은 증거불충분의 문제, 보복의 두려움, 주변인들의 비난과 평가이다. 이러한 문제는 상담소와의 연계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

상담소는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은 물론 법적 증거를 확보하게 하고, 토요법률상담에 연계하여 변호사의 자문이나 법적 상담을 구하며, 경찰과 연계하여 신속한 가해자 검거에 기여하는 등 입체적인 지원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고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법정동행이나 법정진술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증거물로 상담일지를 제시하였고 판,검사 앞으로 진정서나 탄원서를 보내는 등의 지원을 하여 고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상담소 이외 중요한 지원체계로는 병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경찰의 태도 또한 고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상담소와 연계한 병원이나 경찰은 성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태도를 보였던 반면, 그렇지 않은 병원과 경찰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진단서나 소견서는 증거물로서 고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를 발급하지 않으려는 병원이 상당히 많았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진료조차 지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상담소와 연계되지 않은 대부분의 경찰 태도 역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사건을 축소시켜 고소취하 또는 합의를 중용하는 등 고소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외 현행 특별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 장소 규정의 협소함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좌석버스에서의 협박으로 인한 강간, 지하철 화장실 내에서의 강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상범위가 공공장소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장소 전반에서 개인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설과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법의 개정작업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체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병원과 경찰 같은 기관의 지원은 고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상담소의 역할 및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홍보되어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당당하게 피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지원체계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우리사회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Medicolegal Review of the Sexual Violence in Korea

문국진(대한법의학회)

-- 목 차 --

머리글

- I.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 II. 피해자에 야기되는 문제점
- III. 가해자의 공통성과 범행동기
- IV. 어린이 성학대

맺는글

참고문헌

머리글

성과 성행위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성에는 반드시 상대가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사회의 전통과 관습 등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이면서도 자연히 사회성을 띠게 된다. 우리사회에서의 성폭력문제는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지가 오래고 그 선상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어 딸을 둔 어버이로써, 아내 둔 남편으로써는 하루도 마음놓을 날이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4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법률 자체가 실무 해결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 있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바로 다루고 또 피해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간 법의 실무에 반영된 우리사회 성폭력 범죄의 문제점들을 추려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관계되는 분들의 이해와 협력이 있기를 바래서 이 글을 쓴다.

I.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1.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성 이탈

성폭력이란 피해자에게는 생명이 오고갈 수 있는 폭력범죄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성적충동으로 야기된 불쾌한 성 이탈행위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성폭행이란 경시풍조의 표현

성폭행이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성폭력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유형한 힘의 사람에 대한 행사'이기는 하나 사람을 상하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지만 사람에게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되며 만일 사람에게 맞아 상처가 생겼다면 이는 상해죄가 성립된다. 즉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공격이라는 유형의 범죄행위에서 가장 가벼운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강간과 성폭행간에는 천지의 차가 있는데 강간을 성폭행으로 표현하면 모순이 야기된다. 이렇듯 강간을 성폭행으로 표현하는 이면에는 이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사회적인 문제인데 개인문제로

성폭력은 인간존재의 핵심을 파괴하는 것으로 피해여인은 그 삶이 뿌리부터 무너져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인데 이것을 단순한 개인적인 행위로 묵과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겉으로는 피해자를 동정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지만 내심으로는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였길래?'라는 식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좀더 심한 사람

은 강간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소홀했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그 결과에는 어느 정도 묵인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II. 피해자에 야기되는 문제점

1. 침묵, 불신고

우리나라에는 연간 약 25만명이나 되는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되는데 그중 약 5,000명 정도가 신고하며 나머지는 그대로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왜 침묵을 지키게 되는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여자로서의 가치 상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로서 여자로서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든간에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은 수치이며 이런 여자는 여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발설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오히려 주위에서 알게될까봐 쉬쉬하라는 것이다.

(2) 범행제언의 부담

신고하면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다시는 상상하기도 싫은 지난 일들을 다시 재연하고 진술하여야 하는 등의 부담을 안아야 하고 또 이를 매스컴이 취재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자기가 노출되는 등의 부담을 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백안시 하는 풍토와 통념이 두려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그런 꼴을 당한 이면에는 여자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백안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와 통념이 두려워 침묵하게 된다는 것이다.

(4) 합구의 수단으로 역이용

이러한 내막을 잘 아는 범인들은 다른 범죄를 하고 나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강간하여 입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역이용하기도 한다.

2. 강간의 개념과 기준의 이중성

의학적인 성교의 개념은 음경을 질 내에 삽입하여 사정함으로써 완수되는 것으로 보는데 법률상 강간에 적용되는 성교의 개념은 사정이 없어도 음경의 질내삽입 또는 접촉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법문상의 강간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

로 동의 없이 부녀자를 강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의 해석은 피해자가 저항했으나 저항으로 극복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 가해져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는 지적하고 있다. 즉 가해행위나 이에 저항행위에 강도성이 높아야 하며 단순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도성 높은 저항과 결부해서 생각하여야 할 문제는 강간치사 피해자 대부분의 사인이 액사(扼死)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강간시 피해자를 가해하여 의식불명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강간하는데 도중에 피해자가 의식이 회복되어 반항하면 상위에 위치했던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사시키는 액사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반항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치사율은 낮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하지만 일단 강간이 시작된 후에는 강도 높은 반항은 결국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하며 함부로 강도성 높은 저항을 강간의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3. 성폭력과 상해의 개념

상해란 가해받은 손상이 지속성을 지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강간시에 야기되는 성기를 위시한 주변의 손상은 찰과상(표피박탈), 좌상(피하출혈, 타박상), 좌창, 열창등의 손상이며 그 정도로 보아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상부위가 성기가 아닌 부위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상해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강간시에 야기되는 성기의 손상 특히 처녀막의 손상은 한번 파열되면 다시는 원형대로 재생이 안되며 또 강간시에 야기되는 여성성기의 손상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결과는 한 여성의 핵심이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해 제 2, 제3의 피해가 야기되는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강간시에 야기된 여성성기의 손상은 그것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발적, 종창, 찰과상, 좌상 또는 좌열창이라 할지라도 상해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피아니스트에게는 손가락의 적은 좌상도 상해로 인정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4. 제2의 강간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친고죄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에 관한 법률적 및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 통분함과 망설임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중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상, 특히 처녀막 파열창은 2~4일이면 치유되므로 신선한 손상과 진구한 손상의 구별이 되지 않아 비친고죄인 강간상해 또는 치상이 성립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간 이전의 성경험으로 해석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또 다시 더럽히기 때문에 결국은 제 2의 강간이라 할 수 있는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교육이 요구되며, 이를 취급하는 수사관, 법관 그리고 강간피해자의 진료에 임하는 의사들도 이에 대한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억울함이 없는 처리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손상을 검사하여 그 수상후 경과시간을 논의하는 문제는 법의학적인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강간사건에 있어서는 성기에 야기된 손상이 신선한 것인가 아니면 진구한 것인가의 감별에 따라 강간치상 성립여부에 중요한 구성요인이 된다. 여성의 성기 중에서도 처녀막의 손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처녀막 손상은 그 검사 방법이나 표현 또는 그 해석을 둘러싸고 사실 또는 진의와 다른 표현이나 해석을 하기 쉬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기술하기로 한다.

처녀막(hymen)이란 질 입구의 질 주벽에서 돌출된 중심이 도너츠처럼 구멍이 난 동막(洞膜)으로, 결체조직과 점막으로 형성되어 있다. 처녀막에 손상이 없다는 것은 처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형태학적 근거가 된다. 처녀막은 최초의 성교로 파열(defloration)된다. 파열이 신선한 경우에는 출혈, 혈가, 발적, 동통 및 부종 등의 소견을 보이지만 시일이 경과된 것은 이러한 소견이 흡수 소실된다. 처녀막이 파열되면 창연(創緣)이 생기는데, 그 창연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유합되지 않고 치유되므로 영구적인 변화로 남게 된다.

처녀막이 신전성이 풍부하거나 그 구멍이 큰 경우에는 성교에 의하여 파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반대로 성교 이외의 원인으로, 예를 들면 수지 또는 이물을 삽입, 심한 운동, 또는 외상에 의하여 파열되는 경우도 있다. 분만에 의하여 대부분의 처녀막은 흔적만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을 처녀막흔(carunclae hymenales)이라 한다. 이렇듯 여성은 그 성생활과 성기, 특히 처녀막의 형태 변화와 밀접히 관계된다.

의사는 강간 피해자를 검사하고, 처녀막의 파열유무와 만일 파열이 있다면 그것이 신선한 것인가 아니면 진구한 것인가를 반드시 감별하여 이를 진단서에 표기하게 된다.

이때 그 파열이 신선한가 아니면 진구한 것인가에 따라, 즉 그 파열이 신선한 것

이러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강간을 당한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만일 파열이 진구한 것이라면 그것은 피해자의 진술이전의 성교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렇다면 처녀막 파열의 진구성 및 신선성의 시간적인 한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5. 여성 성기손상의 특수성과 시간적인 변화

처녀막이 폭력에 의해 파열되는 경우, 그 파열된 창연에서는 출혈이 야기되고 종창되어 심한 부종을 나타내다가 24시간 내외에 이르면 가피(痂皮)가 형성된다. 36시간 정도가 지나면 창연에서는 상피의 증식이 시작되며, 충혈로 인해 발적을 나타낸다. 감염이 없는 한 4~5일 후에는 새로 증식되는 상피세포 및 결합조직에 의해 완전히 덮이게 된다. 따라서 육안적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 변화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 빨리 진행되는 경우에는 2일까지, 다소 느린 경우에는 수상 후 4일까지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으며 그후에는 주위 조직과의 구별이 불분명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강간피해자를 검진하여 그 처녀막의 파열이 신선한 것임을 육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진구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신선한 것이었는지의 구별이 불가능하게 된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치심 때문에 고소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갈등을 느낀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데도 망설임이 따른다. 또 설사 주변의 사람, 특히 부모에게 알린다 해도 이 분들 또한 망설임을 갖게 된다. 이런 갈등이나 망설임이 이유가 되어, 고소권을 행사하여야겠다는 결정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여 고소하는 경우, 이들은 강간사실만 고소장에 기재할 뿐 성기손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기까지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경과된 후,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처녀막 파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검진을 받을 때에는, 비록 그것이 강간으로 인해 야기된 파열창이라 할지라도 치유된 후이기 때문에 그 진구성과 신선성을 감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수사 당국자들도 강간상해 또는 치상죄 보다는 강간죄로 기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

강간사건의 고소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2~4일이 지나도 사건에 주어진 가치만 변화되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고소의 망설임 때문에 또는 수사절차를 밟는

데 며칠을 소모하다 보면 2~4일이 지나서야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사를 찾게 된다. 그때는 신선했던 파열창이 진구한 파열흔으로 변화한 후이기 때문에 원래는 비친고죄인 강간상해 또는 치상죄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 친고죄인 강간으로 고소할 수 밖에 없는 억울함을 또 한번 당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직업, 나이 그리고 주위의 증언 등을 통해 피해자가 강간당하기 이전에 가진 성경험의 유무와 피해당시의 의복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강간치상을 밝히려 든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강간당하기 이전에 가진 성경험의 유무로서, 이를 밝히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존하게 된다. 이때 진단서에 진구성 파열흔이라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강간죄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특히 피해자가 처녀라면 그 순결성을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의사의 진단서만을 보고 피해자의 처녀성 상실을 몽개 버리고, 이전에도 성경험이 있었던 진구성 파열로 판단하여 단순강간으로 처리한다면 피해자의 명예는 또다시 더럽혀져 제 2의 강간이 될 것이다.

6. 강간시의 성감은 자의와는 무관

강간피해자 중에 때로는 폭행 도중에 느낀 성감 때문에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진해서 이혼하거나 심한 경우는 자살하는 이도 있다.

에리스라는 강간피해 여성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사의 보고에 의하면, 자기가 취급한 피해 여성의 약 반수가 피해 중에 성적인 흥분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그것 때문에 자신에 대한 죄의식, 특히 자기의 육체에 배신당한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며 동물적인 자기를 미워하는 데서 헤어나질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간을 생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피부조직의 중추부와 다른 시체 부위의 연결이 심히 나쁜 상태로 되며, 그것으로 인해 질에 가하여진 물리적 자극이 척추의 원시적 중추에 반응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척추를 통하여 정보가 되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완전히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질에 생긴 생리적 반응을 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그 억제는 사람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런 것에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그 기전을 모르기 때문이다. 피해 중에 성감을 느꼈다면 여성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피해자 자신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인데, 몸으로 저항하고 항거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골반에 심한 손상을 입게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감한 여성이 저항을 못하고 가해자가 하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가해자는 처음에 반항하던 피해자가 가해 도중에는 성적감각을 느껴 저항하지 않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좋아하더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은 강간의 생리적 기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사실은 그것과 다른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가해자, 특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여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라는 판단도 내릴 수 있게된다.

III. 가해자의 공통성과 범행동기

필자는 법의학을 전공한 관계로 강간살인으로 숨진 여성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바 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이 여성을 욕 보였으면 그것으로 끝일 것이지 왜 사람을 죽이기 까지 했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졌다. 그래서 범인이 잡히면 그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대화를 통해 또는 그들을 조사 한 수사관들의 말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알게된 사실을 종합해 보기로 한다.

1. 대부분이 전과자

가해자의 대부분은 전과자 였다. 전과자란 반드시 강간의 전과라는 뜻이 아니라 이번 살인 이전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거나, 강도, 절도, 사기 또는 살인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경력이 있었다.

2. 범행의 계획성

가해자가 피해자를 아는 사이건 모르는 사이건 간에 공통적인 사실은 범행은 계획적이었으며 우연히 야기되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잘 아는 사이라면 어느때 어느것으로 유인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각본이 미리 짜여 있었으며, 모르는 사이라면 어둡고 칩칙한 곳에 미리 잠복해 있다가 지나는 여성을 공격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이 미리 짜여져 있었다는 것이다.

3. 성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

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바 없기 때문에 이성이나 성행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판

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특히 범행동기에 대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을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감을 만족시켜 주는 물건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였다 따라서 강간을 범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농락행위로 보는 경향이 농후했다.

(2) 일단 저지르고 사과하면 되지 않겠는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여성을 겁탈하고 나면 내것으로 된다는 생각에 행동으로 옮겼다는 범인이 많았다.

(3) 처음에는 살해할 의사가 없었는데 지나치게 반항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죽이게 되었다.

(4) 콧대가 높아 그것을 꺾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5) 남성의 진맛을 보여주면 순응할 것으로 생각되어

(6) 여성측에도 잘못이 있다. 한적한 밤길에 몸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옷을 입고 지나가는 것은 마치 비오는데 우산을 쓰지 않아 비에 젖으면 감기에 걸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7) 부인과 싸우고 나서 부인이 도망치자 화가나 식모를 강간해 부인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했다. 여성을 같은 적으로 동일시 했다는 것이다.

(8) “당신부인이나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면 그 가해자를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죽이겠다” 라고 답변할 정도였다.

IV. 어린이 성학대

1. 친속상간과 친속간

친속상간이란 부모자식, 형제자매, 숙부질녀, 숙모질남 사이의 성교를 말한다. 일본 사람들은 이를 근친상간이라 표현하는데 그 영향으로 주로 일본 문헌을 참고한 기록에는 근친상간이라는 용어로 쓰여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조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문헌에서 친속상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간이란 서로가 어울려서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두 사람의 의사가 소통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린이 성학대처럼 어린이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간이라는 용어를 써

서 안되며, 친숙간이라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근래에 와서 전형적인 가족형태가 파괴되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의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한 가정내에 친숙이나 인척이 아닌 사람이 모여 사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친숙상간, 또는 친숙간 등의 용어를 쓸 수 없는 경우 또한 증가되고 있다.

즉 동성의 부부로 구성된 가정, 자녀를 데리고서 이혼이나 재혼하는 경우, 법적인 정식수속을 밟지 않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부부로서 생활하는 소위 사실혼에 있는 가정, 정식부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실혼에 있다 할 정도의 남녀관계도 아닌 단지 내연의 관계처럼 복잡한 형태의 가정들이 출현되고 있어 이런 가정에서 야기되는 가족내 간음관계를 친숙상간 또는 친숙간 등의 용어로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성학대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친숙간이라는 용어는 시대에 맞지 않는 퇴색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2. 파문혀 있는 어린이 성학대

어린이에 대한 성학대(child sexual abuse)란 매우 낮은 단어인데, 어른이 어린이에게 가하는 성폭행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양육자에 의한 친숙간(親屬姦)을 위시해서 원치 않으면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혐오스러운 성행위를 말한다.

어른들이란 가족(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의부모, 양부모 등과 혈연의 친척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혈연관계가 없는 성인을 말하는데, 전자를 가족내 성학대라 하며, 후자를 가족외 성학대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성학대가 적지 않다는 것이 보고된 것은 미국의 NCCAN(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의 보고가 처음이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인구 100만 명당 800~1,000명으로 추정하였으며, 후란켈호(1979)가 6개 대학의 학생 796명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의 19.2%, 남학생의 8.6%가 어린 시절에 성학대의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러셀(1983)이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여성 930명을 조사한 바 16%가 18세 이전에 친숙간을 당했고, 28%가 14세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성학대를 받았으며, 그것이 18세에 이르는 동안에 38%로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친아버지에 의한 것이 2.3%, 의부 또는 양부에 의한 것이 17%나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성폭력상담소가 가동되었다. 1991년 3월에서

1995년 3월 사이의 상담자 3,838명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0세로부터 13세 사이의 어린이에 대한 성학대가 1,251명, 즉 30.6%로서 우리나라에도 어린이의 성학대가 상당수 있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대로 파문혀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발굴하여 어린이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3. 의학적인 증거와 피해의 심각성

피해 어린이의 과거 진료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학적인 근거가 된다. 즉 대개의 경우 피해 어린이는 집에서 천대받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또는 충치가 있어도 치료받지 않는 등 어린이의 건강관리가 무시되고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기 십상이다. 빈혈, 영양불량, 발육부전 등을 보이거나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몸에 상처 또는 화상 등에 의한 흉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부인과적 검사를 실시하면 회음, 항문, 음순 등에 찰과상 또는 이로 인한 반흔을 보게 되고 흔히 대퇴부 내면에서는 피하출혈과 찰과상 등의 손상을 보는 경우가 많다.

질경검사를 해보면 질이 나이에 비해 많이 개대되어 있는 편이며 염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질내용을 검사하면 정자나 임균 칸디다 등이 검출되기도 하며, 혈액검사를 실시하면 매독반응이 양성인 경우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후유증인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를 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명명하고, DSM-III-R로 분류하여 진단의 기준으로 하였다.

즉 피해자의 60~80%는 불면과 악몽으로 고생하게 되며, 공포로 위축되어 있다. 성학대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며, 피해자의 태반이 이러한 분노를 폭발적으로 분출시켜 그것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성에 대한 공포감을 60~94%가 보이며, 성기능의 부전 때문에 도착에 빠지게 되거나 동성애에 흥미를 갖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기억상실, 인격변화, 반사회적 행동, 때로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4. 제3의 피해

성학대의 피해는 신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경우가 더 심각하다.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인내하기 어렵고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며

사회악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마약중독치료기관 조사에 의하면, 여성마약중독자의 44%가 어릴 때에 성학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 매춘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바 약 25%(다른 조사에서는 75%라는 통계도 있음)가 어릴 때 성학대를 받은 피해자라고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마약상습자 또는 매춘부가 되는 배경에는 가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성학대를 받은 어린이의 50%이상이 17세 전에 가해자를 피해 가출하게 되는데 가출한 후에 대부분은 마약이나 매춘과 인연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어린이의 성학대는 육체적인 피해보다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 평생을 같이 따라 다녀 그 인생이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제3의 피해가 따른다.

또 이러한 피해자는 나이가 많아 이해가 풍부한 남성을 구세주처럼 여겨서 결합하게 되는데, 이것마저 실패하면 이성과는 영영 담을 쌓거나 동성에게 눈을 돌리게 되어 동성애에 빠지게 된다.

또 하나 딱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 법에 의하여 대리 처벌되어 형무소에 수감되는 등 가족이 풍지박살되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 주변에서는 책임을 그 피해 어린이 때문인 것으로 돌려 비난하기 때문에 또 한번 가족적인 학대를 받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다루는 수사관, 검찰, 법관, 의사, 복지기관 관계자, 상담자들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무심코 한 언행으로 피해자의 마음에 더 심한 상처를 안겨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더욱 비참한 피해는 이러한 친숙간에서 태어나는 어린이인데, 태어날 때 사산 또는 선천적인 심한 장애를 갖고 출생되어 유아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생존한다 해도 각종 혈액질환, 중추신경장애 및 각종 유전병에 시달리는 비참성을 나타낸다.

5. 관심을 가져야 할 보호대책

과거 우리사회에서는 어린이 성학대 또는 친숙간 등의 문제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문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과, 또 '법은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등의 묵계적인 도덕적 암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가정의 밀실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성학대가 사회의 위험수위를 넘을 정도로 증가되고, 또 '실부살해의 범인은 친숙간의 희생자'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이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아동학대예방협회 또는 성폭력상담소 등이 민간단체 형식으로 결성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팔짱 끼고 보기만 하는 형편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피해자가 12세 이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급범죄로 취급하며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형으로, 즉 형사범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서는 어린이 성학대범에 대하여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그리고 미네소타 주에서는 성학대를 한 아버지에게 징역 40년에 처한 판결이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에 나타난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관련법규가 외국에 비해 미미해서 보완해야 할 요소가 많다.

또한 어린이 성학대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고,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치 남의 일처럼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 예방하는 방법 또한 강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구미에서는 예방대책의 한 방법으로 인형극, 만화 또는 연극을 순회공연하여 비록 가까운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확실하게 '싫다'고 거부할 것, 부모에게는 비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 등을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맺는 글

이상 우리사회에서 야기된 성폭력을 토대로 피해자, 가해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단 성폭력 피해자를 보는 우리사회의 눈은 아직 이들을 감싸기 보다는 냉정한 편이며 성폭력에 대한 이해없이 이를 취급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수사관, 법관, 의사들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또 어린이 성학대 문제는 너무나도 깊이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이를 노정시키는데 어려움이 많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수가 있으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악 또는 범죄의 형태로 언젠가는 우리사회에 반영되며 메아리쳐 오기 때문에 국가는 팔짱만끼고 강건너 불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몇명의 학자나 사회단체의 자각과 계몽, 봉사도 중요하겠지만 이의 중요성을 개탄하고 발벗고 나서는 위대한 정치가의 탄생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문국진(1993) : 성범죄의 이면상, 대한법의학회지, 17:2, 64-70.
2. 문국진(1990) : 법의 검시학, 초판2쇄, 청림출판, 서울.
3. 문국진(1995) : 최신법의학, 개정판, 일조각, 서울
4. 문국진(1992) : 성폭행 피해자의 법의학적 검색, 대한법의학회지, 16:2, 1-10.
5. 문국진(1995) : 성범죄 피해자 진료의 법의학적 소고, 대한법의학회지, 19:2, 1-4.
6. Benek, T.(1982) : Men on Rape, 1st Ed., st. Martin's press Inc. New York.
7. 이마무(1993) : 라이프, 4:4 (라이프 특약)
8. Richard A. Posner(1992) : Sex and Reason, 1st Ed.,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9. S. Brownmiller(1975) : Against Our Will : Men, Women, and Rape. 1st Ed., Simonand Schuster, New York.
10. J. Rechy(1977) : The Sexual Outview; 1st Ed., Grove Weidenfield, New York.
11. Goodwin M. Jean(1989) : Sexual Abuse, 1st Ed., Year Book Medical Pubrishers, INC., USA.
12. 한국성폭력상담소(1995) : 어린이 성학대에 대한 통계, 사신에 의함
13. 한국성폭력상담소(1991) : 어린이 성폭행 세미나 자료집, 1991, 8. 9.-10.
14. Arajin & Finkerhor, D.(1985) : The traumatic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conceptualization. American Journal Orthopsychiary, 55, 530-541.
15. Russell, D.(1986) : The Secret Trauma; Incest in the Lives of Girls and Woman, Basic Book, New York.
16. Carmen, E. et al.(1984) : Victims of violence and psychiatric ill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378-383.
17. Kahr, B.(1991) : The Sexual Molestation of Children; Historical Perspectives, The Journal of Psychohistory, 19(2); 191-214.
18. Webster, L.(1989) : Sexual Assault and Child Sexual Abuse : A National

Directory of Victim Services and Prevention Programs,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 Young, Marlene A. and Stein, John H.(1993) : The Victim Service System : A Guide to Action, Washington, D. C. : NOVA.

성폭력 피해아동의 정신감정에서 제기되는 정신과적 문제점들

적보문(가톨릭의대 정신과학 교실)

미국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규정한 아동 성학대 피해자의 임상평가 기준에 의하면, 임상평가의 목적은 1) 성학대가 일어났었는지의 평가, 2) 피해아동이 보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평가, 3) 피해아동이 신체적 혹은 정서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평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의는 아동의 발달학, 성학대와 연관된 가족내의 역동적 심리상태, 성학대가 아동의 정신상태에 미치는 영향 및 아동 평가방법에 숙달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아동 및 성인의 정신과적 진단에 숙달되어 있는 전문인이어야 한다. 가능한 한 평가자와 치료자는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평가 중에 받은 개인적 편견이 치료에 장애를 줄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평가는 가능한 한 소수의 사람이 평가하고 횡수도 가능한한 줄여야 한다고 하여 아동이 반복적인 조사에 의하여 받는 정신적 압박과 긴장에 대하여 고려를 하고 있고, 또한 반복적인 평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피임시성에 의한 사실의 왜곡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면담장소는 편안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장실, 경찰서, 응급실과 같은 권위가 느껴지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여 권위에 의한 피암시성을 배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해 아동과의 면담에서 가능한 녹화 혹은 녹음을 권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첫 번째 기술을 보관하기 위함이고 또한 평가과정이 불필요하게 반복됨으로서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녹화 혹은 녹음자료가 아동에게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증거자료

로 채택시 아동의 말에 과도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녹화/녹음하는 것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의 규정요소들로는 병력청취상의 의무조항, 보호자면담에서 얻어야 할 정보의 종류, 僞성학대의 가능성에 대한 감정,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 심리검사 항목 등이 열거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규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인에 의한 반복적인 면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동의 피암시성에 의한 사실의 왜곡과,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정신과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발달상태에 따라 표현 방법이 성인의 표현방법과 다를 수 있음을 중요시 여겨 숙달된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미국의 규정을 참조로하여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에 추가 혹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았다. 실제 상황에서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개념의 정립의 문제, 성폭력에 대처하는 일선기관에서의 제도상의 문제점과 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상의 차이등이 있으나 정신과적인 문제점만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정리하여 보았다.

아동 성학대를 포함하여 일반적 성폭력 피해자를 정신감정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혹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자면,

- (1) 미성년자 강간, 강제적 행동, 성추행 및 성희롱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 (2) 아동의 경우 기술의 부정확성 때문에, 그 아동의 발달상태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상황을 뒷받침하는지 이에 대한 전문적, 법적 최저기준이 필요하다.
- (3) 僞 성학대 보고에 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아동 성학대 가해자의 정신감정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한다.
- (5)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서 나이차에 의한 강제성의 정의가 되어있지 않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경우, 몇살의 나이차가 강제성을 떨 수 있는 것인지,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 (6) 성폭행을 최초로 보고받는 기관(학교, 유치원, 경찰서, 병의원등 포함)에서는 이 보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행하여야 할 단계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는 절차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7) 성폭력의 평가는 조직화된 하나의 팀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팀은 각 부분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어(예, 소아과 의사 혹은 소아부인과 의사, 소아정신과 의사, 심리검사자, 아동사회복지학자, 법률가 및 경찰등)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피해아동에 대한 평가는 팀 자체내의 토의를 거쳐 일정 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형식이 제정되는 것이 편리하다.

(9) 성폭행 피해아동을 최초로 면담할 때에는 녹음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이 백 수 (변호사)

I. 시작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도 벌써 2주년이 지났다. 특별법 제정 당시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실상이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법원이나 검찰, 언론매체에서도 성폭력이 단순한 개인간의 이해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사회문제라는 시각에서 다루게 된 것은 그나마 자위할만한 성과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특별법 이전에는 처벌의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근친간의 성폭력 문제가 사건화되고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된 점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점 등은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우리 사회에 서서히 뿌리내려가고 있는 중요한 단면이었다고 생각된다.

특별법의 제정이 위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치유)에 대한 부분은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에도 그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법 규정의 여러가지 문제점도 한 원인이 되었다.

아래에서는 특별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특별법의 개별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II..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와 관련된 문제

1. 예방

1)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육체적, 재산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후 금전배상 등의 방법으로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며 피해의 후유증으로 가정과피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는 범죄자의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문제보다는 범죄의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여진다.

2) 특별법제정 당시에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는지 특별법 제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선언적규정을 마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아직까지도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백지상태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의 개정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특히 우리 사회에 성개방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예방은 범죄발생의 전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시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요망되지만 우선 실시가능한 방법을 나열해 보면, 중·고등학교 윤리과목 등에 예방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신입사원 연수교육시 교육과목으로 법정화하는 방법, 각종 책자발간 및 홍보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기구신설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재범방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성폭력은 재범 및 상습적인 범죄의 발생여지가 많은 범죄이므로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 16조 제, 제 17조에 보호관찰 및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소년의 경우에만 필요적 보호관찰의 대상으로 하였을 뿐 성년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성폭력범죄는 연령과는 관계없이 재발되는 것이므로 성년자도 필요적 보호관찰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보호관찰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보호법에 의해 실시되는 기존의 보호관찰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

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III. 피해자 보호(치료)문제

1.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 등

특별법 제 4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1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 31조 상담소직원 등이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법 제 35조 제 3호)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무런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처벌규정이 없는 의무부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법 제 21조는 구성요건이 형법 제 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유사하지만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 된 현실정을 감안한다면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위 법조항의 실효성 보장과 제 31조와의 형평상 타당하다.

2. 피해자의 절차참여 및 신변보호

특별법 개정 논의 내용중 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인정해 주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여러차례 제시되었다.¹⁾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294조의 2(피해자의 자술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권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피해자 진술권 및 전담여성경찰의 배치 등의 문제는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있어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변보호에

1) 이종걸, 성폭력규제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이후 그 적용실태와 이로 인하여 제기되는 법적문제

대한 것이다. 1994. 9.경 수원에서 발생한 '김경록증인보복살해사건'도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사건임을 기억한다면 신변보호의 문제는 굳이 그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특별법 제 20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 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 특례법의 규정자체도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지극히 미흡하므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및 증인보호문제는 성폭력 피해자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미국의 '증인및피해자보호법'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법률의 제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 상담소 설치·운영의 현실화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구제에 있어 성폭력 상담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이미 몇몇 사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상담소의 시설, 규모, 인력만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미온적인 방법으로 상담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상설적인 기구를 두어 상담소 수를 늘리고 시설이나 인력충원에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기존의 국·공립의료기관 등 시설을 성폭력피해자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라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소속의 상담소 대부분이 유지비 등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경비만으로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제 2조, 제 3조)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상담소가 기부금을 받아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가 근친성폭력에 의한 취학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에는 문제점이 없지만(특별법시행규칙 제 9조) 보호시설과 취학미성년자가 기존에 다니던 학교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관계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 26조 보호시설의 업무범위(보호시설의 장은 사유를 소명하여 입소한 취학미성년자의 전학을 각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각 학교의 장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생의 전학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IV. 처벌규정의 문제

1. 법정형의 중형화

특별법의 제정목적은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기존법률로써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구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특별법은 예방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소홀히 한채 성폭력범죄의 법정형(대부분 5년 이상의 중형이다)만 높여놓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길 바라는 마음이겠지마는 아무리 범죄자가 하더라도 그들도 인간이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역시 타범죄의 경우와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민주국가의 법률인 것이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물론 법정형을 높혀 규정하게 된 이유가 지나칠 정도로 낮은 법원의 선고형량에 대한 시민들의 감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사법부나 검찰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례를 가정해 보자. 칼을 든 청년이 한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여성의 반항 때문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청년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범행을 시도한 청년은 특별법 제 9조 제 1항이 적용되어 법원은 법정형인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기준으로 선고형량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년은 최소한 3년 6월을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 청년이 초범이었고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하여도 더 이상의 감형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위에서 실시한 예를 교과서식 범죄라고 비판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예는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형을 선고받아야 할 피고인에게 오히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법정형의 중형화로 인한 모순이다.²⁾

2. 사실상의 존속 또는 친족의 범위

특별법 제 7조 제 1항, 제 2항은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강간, 강제추

2) 이종걸, 전개논문

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3항에서는 제 1, 2항의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김보은양사건'과 같이 동거하는 의부(義父)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 4항에서는 제 1항 및 제 2항의 존속 또는 친족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제 7조 제 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의 범위에 의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의부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계는 물론 각종 여성단체에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사건으로는 존속 또는 친족의 범위를 혈족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 3항의 규정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의 견해에 수긍이 간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당부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발생하는 유사범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위 제 3항의 친족의 범위를 민법(제 777조)규정에 따라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되면 의부와 시부(媿父)등이 4촌 이내의 인척(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 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³⁾

이러한 문제외에도 위 제 1항 및 제 2항은 '존속등 연장의 친족'으로 범행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연장이 아닌 친족에 의한 범죄는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친고죄 규정의 문제

특별법 제 16조는 '제 11조, 제 12조(제 1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 13조 및 제 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피해자보호에도 그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목적보다는 형법 등 기존의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비도덕적, 반인륜적 범죄를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도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위 친고죄 규정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비친고죄 내지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각 죄를 최소한 반의사

3) 박종연, 성폭력법상의 의붓아버지의 처벌 가부

불벌죄로 규정하게 되면 특히 어린이 등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있어 노출을 꺼려하는 피해자나 가족의 약점을 이용하는 문제 등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4. 어린이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어린이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피해자에게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기존의 형법(제 302조, 제 305조)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법상 위 죄는 친고죄로 되어있어 피해자를 상당한 교사, 상담원 등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의 협력이 없으면 수사기관 등에 처벌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특별법에서 어린이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추가하고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어린이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5. 기타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자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인데 여기에 주거침입을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주거침입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V.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은 여러가지 규정의 문제로 인하여 입법 당시 의도하였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의 제정으로 성폭력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사법부 및 검찰 등의 인식에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최근 두가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1996. 4. 14. 서울고등법원(형사 5부 최병학 부장판사)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우산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동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한 행동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⁴⁾ 또한 1996. 3. 28. 위 법원(형사 1부 권성부장판사)에서는 강간을 모면하려고 가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흥여인에게 형법 제 21조 제 3항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⁵⁾ 위 두가지 사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인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남짓한 시점에서 완벽하게 위 법이 시행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법률상, 정책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관계기관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끈기와 노력이 요망되며 무엇보다도 성폭력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활동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4) 동아일보, 1996. 4. 14.

5) 중앙일보, 1996. 3. 28.

II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어제와 오늘

- A. 설립배경
- B. 성장과정
- C. 활동일지

A. 설립배경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피해사실을 자신만의 숨겨진 비밀로, 혹은 가족의 수치로 간직한 채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극소수 피해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다고 해도 사법처리과정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성폭력 발생률은 갈수록 증가해왔다.

1980년대 이후 몇몇 여성단체의 꾸준한 노력과, 변월수, 강정순, 권인숙 사건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성폭력 사건의 발생, 그리고 여성학관련 논문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문제와 일반인들의 잘못된 통념, 사법절차상의 성차별 등이 지적되면서 그동안 은폐되었던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990년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남녀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느낀 몇몇 사람들이 모여 성폭력 피해여성을 돕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강간위기센터(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여성운동 실천의 장으로 최초의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폭력문제는 여성이면 누구나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대책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동안 계층별로 이해를 달리했던 여성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1990년 10월부터 상담소 설립준비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상담소의 명칭을 “한국성폭력상담소(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로 결정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담소 활동에 동참할 발기인을 모으고 이사진과 상담, 법률, 의료, 연구, 각 분야의 자문위원을 섭외해 갔다. 이와 함께 기금마련을 위한 후원회원 모집, 호루라기 볼펜 제작·판매, 안내책자와 브로셔 마련, 홍보활동, 초기상담원 교육실시(12주) 등의 기초작업을 해나갔다. 이러한 준비작업은 한 후원자가 제공한 개인주택에서 이루어 졌다.

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이 마련되면서 1991년 3월에 사무실을 서초동으로 옮기고, 4월 13일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에서 개소식을 갖고 상담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B. 성장과정

1) 개소에서 위기센터 설립까지(1991. 4. 13 - 1993. 12. 13)

상담개시 - 성폭력전문상담소가 개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가기 무섭게 2, 3월부터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30여년 전에 당한 피해때문에 일생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아 왔다는 50대 아주머니의 하소연에서 부터 다섯살 딸아이의 끔찍한 상처를 보고 경악하는 엄마의 절규까지 전화로, 편지로, 면접으로 상담은 줄을 이었다. 몇 안되는 상근자의 책상도 다 마련하지 못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내담자와 함께 가슴 아파하고, 울분을 토하고, 구체적인 극복방법과 대처방법을 모색하며, 이땅의 고통받는 여성으로 하나가 되곤 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주며,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작업은 상담소 초기에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절차와 지식, 의료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지원처가 되었으며 이 문제에 공감하는 경찰관계자, 변호사, 산부인과, 정신과 의사들이 각 전문분야에서 도움을 주고자 지원을 자청하였고 조그만 도움이라도 같이하고 싶다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이 열성과 시간과 기금을 합해왔다.

조사·연구·교육활동 - 상근자와 상담원들은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각종 자료집 제작과 배포, 성폭력 예방 비디오의 제작 등으로 성폭력의 실상과 문제점을 밝혀 그 대책을 마련했으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부 세미나, 사례연구모임,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 피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폭력상담의 피해유형과 상담방법을 연구하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개발하여 나가면서 성폭력상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워 나갔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의 학교, 단체, 회사, 학부모, 교사에 대한 사회교육과 홍보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우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성폭력사건 재판지원활동 - 91년 "나는 사람을 죽인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것"이라는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 김부남 사건, 92년 13년동안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김진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고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과 캠페인, 피해자들과의 법정동행 등을 통해 성폭력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성폭력 실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일깨우는 운동을 펼쳐 나갔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 갈수록 다양하고 흉포화 하는 성폭력을 기존 성폭력관련법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뜻을 같이하는 타단체들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성폭력 예방,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및 사후대책, 성폭력 유발 환경개선 등이 포함된 성폭력특별법이 93년 12월 17일에 제정되어 94년 4월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가해자에 대한 법적제재와 처벌을 하고자 하는 내담자가 늘어나 신고 및 고소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위기센터 개설 - 피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상담을 하거나 고소하는 경우, 물적인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난관에 부딪치는 내담자들을 보면서 피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청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해야함은 물론이고 빠른 시간내 의료적인 증거채취와 진단서 발급을 하는 의료기관의 확보, 위기상황에서의 충분한 심리적 지원과 상담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고 증거채취와 경찰연계가 가능한 24시간 운영하는 위기센터가 필요했다. 이러한 위기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한 일반시민, 각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기금이 마련되어 93년 12월 13일 증거채취실과 면접상담실, 당직실을 갖추고 24시간 운영하는 위기센터를 개설하였다.

2) 위기센터에서 열림터 개설까지(1993. 12.13 - 1994. 9. 14)

피난처의 필요 - 상담소가 문을 열고 3년동안 일반상담과 위기센터를 통해 6천5백여 회의 성폭력피해사례에 대한 심리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해오면서 성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피난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특히 근친 성폭력에 시달리는 피해 여성은 가해자와 함께 사는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성폭력으로 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열림터 개설 - 이러한 내담자를 보호하는 피난처를 마련하고자 개소 3주년 기념 행사를 "위기센터·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로 준비하여 여성을 걱정하는 시민의 모임등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관심과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에서는 성폭력피해 후유증 극복사례들을 분석하고 극복의 과정과 상담기술을 연구하여 왔다. 피난처의 명칭을 "열림터"로 정한 7명의 열림터 운영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열림터의 기능과 운영방법의 틀을 잡고, 피해여성의 심리적 극복을 돕

는 상담의 기법들을 연구하고 훈련하였다.

한편, 각분야의 전문자문위원들, 자원활동가들, 후원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와 마침내 94년 9월 14일 “열림터”개설식을 가진 후 40여명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일반상담, 위기센터의 위기상담, 피신처와 안식처로서 후유증 극복상담을 할 수 있는 열림터가 마련되어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총체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졌다.

3) 열림터에서 현재까지 (1994. 9. 14. - 1996. 4. 13)

성폭력 없는 사회,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족처럼 서로 협력하며 연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성원들은 현재 10명의 이사와, 소장의 상근자 11명, 위기센터 야간간사 2명, 열림터 간사 2명, 법률, 의료분야 자문위원 105명, 상담원 교육수료자 147명, 현재 활동상담원 30명, 사무자원활동가인 나눔이가 20명, 남녀 대학생 자원활동가인 지킴이가 70명, 그리고 후원회원이 240여 명이다.

토요법률상담 실시 - 일반상담, 위기센터, 열림터라는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 상담소는 “내담자 지원체계의 정착과 활성화,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주력 사업으로 정하였다. 상담지원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변호사 12인이 매주 토요일에 법적 지원사례를 검토하고 내담자를 직접 면접하는 “토요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상담 전문교육기관 지정·열림터 허가 - 1994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 성폭력 전문상담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95년 1월에는 열림터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 활동 - 직장내 성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을 널리 펼쳐온 상담소에서는 타단체와 연계하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교육 및 홍보 - 이외에도 주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항의문, 건의문, 진정서 발송 등을 하여 성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법관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왔고 단행본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 발간, 음란 폭력성 조장매체 대책 시민협의회, 성폭력 추방주간 행사 활동, 정신대 수요시위 주관 등 왜곡된 사회제도를 시정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4) 장기 발전 계획

이제 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서 그 위상과 틀을 갖추게 되었다. 5년 동안 9천 9백여 회를 상담하고 이 상담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각 피해유형의 특성과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홍보하여 왔으며 성폭력의 문제 뿐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모든 공식보도기관과 학회에서 상담소의 자료를 인용할 정도로 상담소의 공신력이 높아졌고, 국가에서도 본 상담소를 성폭력상담원 위탁기관과 보호시설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심도깊은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담원 재교육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후유증 극복 사례집, 근친성폭력 자료집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거대한 남성중심적 성문화를 변화시키고 인간중심적 성문화 창출의 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담소는 성문제를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연구소, 이러한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출판기관,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훈련원 등이 한몸을 이루는 종합센터를 세우고자 한다. 이 종합센터의 설립은 성에 관한 다양한 영역에서 성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총체적 활동을 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

C. 활동일지

<1991년>

- 4. 13. 개소식 (이화여대 중강당)
<나눔터> 창간호발간
- 4. 23. 제1기 상담원 예비 여성학교육 시작
- 5. 17-19. 세계 성폭력관련 여성지도자 WORKSHOP 참가
- 7. 6-7 상담원 숙박교육
- 7. 9. 제1기 상담원 예비여성학 교육 수료식(16명 수료)
- 7. 30. <나눔터> 발간
- 8. 9-10. 제1회 정기 세미나 개최 (주제: 어린이성폭행)
- 8. 20. 제1기 상담원 본 교육 시작
- 8. 21.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결성
- 10. 8. 제1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 (18명 수료)
- 11. 23. 세계 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행사 “어린이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마당” 개최
- 11.30-12.15. 아시아 여성을 위한 여성문제 WORKSHOP 참가
- 12.21-22. 상담원 숙박교육

<1992년>

- 1. 11 제1차 정기총회
제1회 상담사례연구 모임

- 2. 22. 제2회 정기세미나 개최 (주제 : 데이트강간)
- 2. 25-29. 성폭력 예방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현대백화점)
- 3. 17. 제2기 상담원 예비 여성학 교육 시작
- 3. 30. <나눔터> 제3호발간
- 4. 2-12. 일본 아시아여성회의 참가 (최영애 소장)
- 4. 25. 감수성훈련 시작
- 4. 30. 첫돌 잔치 및 장소이전 기념 집들이
- 5. 12. 제2기 상담원 예비 여성학 교육 수료식 (17명 수료)
- 5. 26. 제2기 상담원 본 교육 시작
- 5. 30. 감수성훈련 종료
- 6. 24. 성폭력 위기센터 발기인 대회 (프레스 센터)
- 7. 8. ‘집단상담 프로그램’ 을 위한 모임 시작
- 7. 11-12. 상담원 숙박교육
- 7. 14. 제2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 (16명 수료)
- 7. 25. <나눔터> 제4호 발간
- 8. 22. 제3회 정기세미나 개최 (주제 : 직장내 성폭행)
- 9. 5. 제1차 임시총회
- 9. 18. 홍보용 스티커 제작
- 10. 20. 제2차 임시총회
- 10. 24. 상담소 내부 바자회
- 10. 29. <나눔터> 제5호 발간

11. 5. 성폭력위기센터 설립 기금을 위한 만찬회 (하이아트 호텔)

12. 23. 한해 보내기 모임

12. 30.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 보는 성』(동아일보사) 출판

<1993년>

1. 12. 자문위원 신년모임

1. 28. 싸이코 드라마 관람 시작

1. 30-31. 상담원 숙박교육

2. 6. 제2차 정기총회

2. 27. 성문화 읽기 모니터 모임 시작

3. 1-5. 일본 JISS회의 참가 (어린이 성폭행 실태)

3. 16. 제3기 상담원 예비 여성학 교육 시작

4. 10. 제4회 정기세미나 (개소 2주년기념 자료집을 위한 WORKSHOP)개최

4. 16. '친족 성폭력의 실태' 논문 발표

4. 28. <나눔터> 제7호 발간

4. 29. 개소 2주년 기념행사 - "나눔과 모음의 한마당" (YWCA강당)

6. 15. MORASH 강연 : 사회변화와 위기센터의 역할 및 기능
(전진상 기념관)

6. 27-28. 숙박교육

6. 29-30. 여성 웨프라인 위기센터 기금마련 바자

7. 30. <나눔터> 제8호 발간

8. 23-26. 기금마련 로젤 공연

8. 31. 내부 바자

9. 15-23. 위기상담 상담원 교육

10. 5. 법률·의료 자문위원 모임

10. 8. 법의학회 발표

10. 15. 제4기 상담원 교육 시작

11. 11. <나눔터> 제9호 발간

11. 19.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시사회(인켈 아트 홀)

11. 19-20. 위기센터 지킴이 교육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12. 13. 위기센터 개설식 (기독교연합회관)

<1994년>

1. 11. 위기센터 위촉의 모임

1. 22. 최영애 소장 여성동아대상 수상 축하모임

2. 5. 제3차 정기총회
<나눔터> 제10호발간

2. 7. LINDA GRAHAM 강연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확보와
위기센터의 중요성

2. 25. 자문위원 신년 모임

3. 14. 상담지원위원회 결성모임

3. 31. 제5기 상담원 교육 시작

4. 29. 제2기 지킴이 교육 시작(78명)

- 5. 14. 개소 3주년 기념행사 - “위기센터, 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서울교육문화회관)
- 5. 23. <나눔터> 제11호 발간
- 5. 28. 제2기 지킴이 수료식

- 6. 23. 제5기 상담원 수료식
- 6. 25-26. 숙박교육(고양 유스호스텔)

- 7. 9. 운영위원회

- 8. 2. 상담일지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시작
- 8. 24. 132차 정신대 수요시위 주관
- 8. 31. <나눔터> 12호 발간

- 9. 14. 열림터 개설식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 9. 27. 제6기 상담원 교육 시작

- 10. 7. 인하대 간호학과 학생 현장실습

- 11. 11. 제3기 지킴이 교육 시작 (62명)
- 11. 12. 지킴이 하루찾집 (전통찾집 솟대)
- 11. 22.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심포지움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개최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 11. 25. 제3기 지킴이 수료식

- 12. 10. 운영위원회
제6기 상담원 수료식
- 12. 28. <나눔터> 제13호 발간

<1995년>

- 1. 23. 상담일지 전산화를 위한 상담원 교육
- 1. 24. 자문위원 신년모임

- 2. 11. 제4차 정기총회
- 2. 6-17. 전산화 실습교육
- 2. 20. 상담지원위원회 토요법률상담 준비모임
- 2. 28. 상담사례연구모임

- 3. 4. 토요법률상담 실시
- 3. 28. 상담원 워크샵 - 성폭력 피해 후유증 상담을 위한 정신과적 대응

- 4. 8. <나눔터> 14호 발간
- 4. 21. 개소 4주년 기념행사 - “함께하는 위기센터를 위하여”
(홍사단 대강당)
- 4. 28. 토요법률상담 전제모임

- 5. 11-6. 22 제7기 상담원 교육
- 5. 12-5. 27 제4기 지킴이 교육

- 6. 24-25. 숙박교육
- 6. 29. <나눔터> 15호 발간

- 7. 12. 정신대 수요시위
- 7. 22. 직장내 성희롱 예방비디오 내부시사회

- 8. 21-22. 열림터 집단상담 훈련
- 8.29-9. 7 제4차 NGO 포럼 참가

- 9. 20. PC통신 개설준비 시작
- 9. 25. 직장내 성희롱 예방비디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시사회

<나눔터> 16호 발간

- 10. 13-21. 제10기 나눔이 교육
- 10. 24. 열림터 개설 1주년 기념행사 『내일을 여는 열림터』
- 10. 31. 토요법률상담 전체모임
- 11. 8. 위기센터 위축의 전체모임
- 11. 20. 열림터 후원의 밤 『열린마음, 열린세상』
- 12. 16. 한해보내기 모임
- 12. 25. <나눔터> 17호 발간

<1996년>

- 1. 24. 신년자문위원 모임
- 2. 10. 제 5차 정기총회
- 3. 5. <나눔터> 18호 발간
- 3. 7. 열림터 내담자를 위한 정신과 전문가팀 모임
- 3. 20. 의료, 법률 전문가 전체모임
- 3. 22-29. 제 11기 나눔이 교육
- 3. 8-4.18 제8기 상담원 교육
- 4. 20-5. 18 제5기 지킴이 교육
- 4. 30. 개소 5주년 기념행사

<연대활동일지>

1991년

- 성폭력 피해자 김부남 후원회
-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1992년

-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 윤금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993년

-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정신대 수요시위 주관 (73차)

1994년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음란 폭력성 조장 매체 대책 시민협의회
- 참사랑 쉼터기금 마련 안혜경 콘서트, 장애인의 날 행사 후원
- 정신대 수요시위 주관 (132차)

1995년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김교사 성폭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법적절차 및 대응방식

법적절차 및 대응방식

1. 관련 법률 용어

1) 고소 : 피해자 혹은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2) 항고 :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3) 구속/불구속 : 피의자(가해자)를 구속수사 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 할 것인지를 말함. 피의자의 죄질이 아주 나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도주하거나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한다.

4) 求公판(기소, 공소제기)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5) 공판(재판) : 재판과정

① 심리 - 판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재판의 전 과정(피고인 신문·증인 신문·참고인 진술·구형·최후변론·피고인 최후진술·선고)을 말한다.

② 항소 - 판결후 7일 이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

③ 상고 - 항소심 판결이후 7일 이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

6) 불기소 : 검사가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5종류가 있다.

① 기소유예 -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② 기소중지 -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

- ③ 공소권 없음 -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경우, 또는 내사 진정으로 인해 수사했으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혹은 고소를 취소한 경우
- ④ 혐의 없음(무혐의) - 증거 불충분이나 기타 이유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 ⑤ 죄가 안됨 -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등과 같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7) 기각

- ① 구속영장기각 - 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때는 구속수사를 할 수 없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함.
- ② 공소기각 - 관할 위반 공소취소, 즉 기소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로 소송의 종결을 말함.

8)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무고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고소장 작성시 반드시 사실만을 기록해야 함. 단, 허위나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이 인정될 때는 무고죄는 성립 안 됨.

2. 고소 절차 및 과정

1) 고소 절차

- ① 고소장 작성 - 6하원칙에 의거해서 본인이 작성하거나 사법서사에게 의뢰한다. (상해 진단서·편지·녹음테이프·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첨부)
- ② 경찰·검찰에 고소 -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민등록지, 사건발생지의 관할 경찰서, 혹은 관할 검찰청에 고소 한다.
- ③ 경찰에서 가해자(피의자) 신문 -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 ④ 경찰에서 가해자와 대질신문
- ⑤ 검찰에 송치 - 보강수사, 기소여부 결정
- ⑥ 법원 - 재판(증인진술이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야 함)
- ⑦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통고가 없으므로 1심재판이 열린 법원 형사과에 문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2) 고소기간 : 범인이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함

3) 고소 후 진행과정



4)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기간

- ① 구속수사시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수사해야 함 (경찰 10일 + 검찰 10일 + 보강수사 필요시 10일 / 불구속일 경우는 관행상 3개월 이내)
- ② 기소이후에는 2개월 이내에 재판이 실시되어야 함
- ③ 재판 소요기간은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5) 합의를 할 경우

- ① 고소 후 법원판결 이전까지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하면 친고죄인 경우 고소는 자동 취하되거나, 비친고죄(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강도강간, 강간치사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인 경우는 형량에만 영향을 미친다.
- ②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고, 가해자의 재산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1) 소식지

계간 <나눔터> 발간 제1호 - 제18호

(2) 세미나 자료집

어린이 성폭행 세미나 자료집(1991)
데이트 강간 세미나 자료집 (1992)
직장내 성폭행 세미나 자료집 (1992)

(3) 일반 자료집

제1기 예비여성학 교육자료집 (1991)
제1기 상담원 자료집 (1991)
제2기 상담원 교육자료집 (1992)
제2의 탄생을 예고한 두개의 강의 - 제2기 상담원 교육 자료집 (1993)
제3기 상담원예비 여성학 교육 자료집 (1993)
개소 2주년 기념 자료집 (1993)
위기센터와 우리의 역할 (1993)
열린터 개설식 자료집 (1994)
지킴이들의 세상읽기 (1994)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 세계성폭력추방기간 기념 심포지움 (1994)
나눔이, 알고 시작합시다 (1995)
개소 4주년 기념 자료집 (1995)
내일을 여는 열린터 (1995)

(4) 소책자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1991)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 어린이 성폭행 예방과 대책 (1991)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 직장내 성폭행 예방과 대책 (1992)

(5) 단행본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 보는 성』, (1992)

(6) 연대활동 자료집

이제,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 (1991)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1 - 강제추행, 강간 (1992)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2 - 아내구타,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 아내강간
(1992)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1993)
침묵에서 외침으로 (1994)

(7) 비디오

내몸은 내가 지켜요 (1993) - 어린이성폭력 예방을 위한 비디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1995)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비디오